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7 차 정 무 위 원 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 변경〉

- 정연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082호)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922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승 기

목 차

I. 정연욱의원안	1
II. 김상훈의원안	2
III. 검토의견	4

I. 정연욱의원안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연욱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8. 22.

(3) 회 부 일 : 2024. 8.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규제로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은 2009년에 도입되어 그동안 커진 경제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공시대상기업집단 수의 변화를 보면 2009년 48개에서 2022년 76개로 늘어 고정된 지정기준으로 인하여 대기업 규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중견기업이 대기업 진입을 미루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중견기업의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평가임.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3%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하여 국내총생산액과 연동되도록 함으로

써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 성장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전단 등).

II. 김상훈의원안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상훈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9. 11.

(3) 회 부 일 : 2024. 9. 1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규제로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일정액으로 삼다 보니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현실이 초래되고 있음. 실제 현행 지정기준이 도입된 2009년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가 48개이던 것이 2024년에는 88개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

준을 자산총액 기준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서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한 것과 같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국내총생산액과 연동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2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함으로써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의 탄력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6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에 필요한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액의 0.25% 이상(김상훈의원안)
 또는 0.3% 이상(정연욱의원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김상훈의원안	정연욱의원안
제31조(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지 정 등) ① 공정거 래위원회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산정한 자 산총액이 5조원 이 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공시 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 내총생산액의 1천 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 집단을 대통령령으	제31조(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지 정 등) ① ----- ----- ----- ----- ----- ----- <u>국내총생산</u> <u>액의 1만분의 25에</u> <u>해당하는 금액</u> ----- ----- ----- ----- ----- ----- ----- ----- -----	제31조(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지 정 등) ① ----- ----- ----- ----- ----- ----- <u>국내총생산</u> <u>액의 1천분의 3에</u> <u>해당하는 금액</u> ----- ----- ----- ----- ----- ----- ----- ----- -----

현행	김상훈의원안	정연욱의원안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1만 분의 25 및 국내총 생산액의 1천분의 5----- ----- ----- -----.	⑥ ----- 국내총생산액의 1 천분의 3 및 국내 총생산액-----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지배구조 또는 대규모 기업집단 내의 기업 간 거래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효과적 감시와 견제를 이루고 기업 스스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¹⁾하고, 각종의 공시의무 등을 부과함.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구분	주요내용
제26조	-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27조	- 비상장사 등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공시
제28조	-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계열회사 현황, 상호·순환출자 현황 등 기업집단 현황에 대한 공시
제29조	-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주식 처분·취득 등에 대한 공시
제30조	- 재무상황·다른 국내 회사 주식의 소유현황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로의 신고
제35조	- 지배구조현황, 공시대상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간의 출자·재무보증·거래관계 등에 관한 정보공개
제47조	-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국내 계열회사(또는 그 계열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금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한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원사업자인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등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외 다른 법률에서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를 부과함.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타법 규제 사례>

연번	법령	조항	내 용
1	벤처기업육성법	제16조의12	벤처기업이 공시집단 계열사 편입 시 복수의결권 주식의 보통주 전환 금지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공시집단 소속 회사 중소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소상공인이 공시집단 소속 회사로 편입·통지된 경우 소상공인에서 제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공시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이익 증여 계산 시 중소기업보다 이익금 수준을 작게 계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공시집단 소속 회사 임원의 경우 퇴직 후 5년 동안 퇴직임원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포함
		제34조의3	공시집단 소속 회사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 배제
6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공시집단 소속 회사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
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공시집단이 과밀억제권역 내 설치한 기업부설 연구소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
8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의3	공시집단 소속 회사는 업무용 차량 구매·임차 시 일정비율 이상의 친환경 자동차 구매목표 이행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4	친환경 자동차 구매목표 이행 대상자 범위에 공시집단 소속 회사 포함

9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0	공시집단 소속 회사의 경우 기관전용 사모투자 기구에 대한 특례 미적용
10	신용정보법	제5조	공시집단 소속 회사가 10%를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신용등급제공/기술신용평가 업무 허가 불가
11	인터넷전문은행법	제6조	인터넷전문은행은 공시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 가능
1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8조	전자금융업을 행하려는 신청인의 대주주가 공시집단 소속 회사인 경우 그 신청인은 금융위가 정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필요
13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4조	공시집단 소속 비상장사가 자산총액이 1천 억 원 이상인 경우 외부감사법상 대형비상장사에 해당
14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4조	공시집단 소속 회사는 여성 근로자 고용 기준 준수 등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시행계획 수립 부과대상 해당
15	하도급법	제25조	공시집단 소속 원사업자에 대해 결제조건 등 거래내용에 대한 공시 의무 부과
1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공시집단 소속 부동산투자회사는 감사위원회 설립·운영 등 상법 규정 적용배제 대상에서 제외

□ 공정거래위원회의 「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는 88개 기업집단이 지정되었습니다.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

연번	구분	기업집단명	자산총액 (단위:조원)	연번	구분	기업집단명	자산총액 (단위:조원)
1	상출	삼성	566.822	45	상출	엘엑스	11.357
2	상출	에스케이	334.360	46	상출	넷마블	11.311
3	상출	현대자동차	281.369	47	상출	에코프로	11.219
4	상출	엘지	177.903	48	상출	이랜드	10.910

5	상출	포스코	136.965	49	공시	한국엔컴퍼니그룹	10.377
6	상출	롯데	129.829	50	공시	태광	9.663
7	상출	한화	112.463	51	공시	금호석유화학	9.596
8	상출	HD현대	84.792	52	공시	다우키움	9.539
9	상출	지에스	80.824	53	공시	두나무	9.465
10	상출	농협	78.459	54	공시	삼천리	9.428
11	상출	신세계	62.051	55	공시	동원	9.383
12	상출	케이티	46.859	56	공시	KG	9.160
13	상출	씨제이	39.854	57	공시	HL	8.839
14	상출	한진	39.092	58	공시	한국지엠	8.775
15	상출	카카오	35.127	59	공시	아모레퍼시픽	8.350
16	상출	엘에스	31.965	60	공시	대방건설	8.160
17	상출	두산	26.960	61	공시	한국항공우주산업	7.238
18	상출	DL	26.769	62	공시	애경	7.125
19	상출	셀트리온	25.696	63	공시	엠디엠	7.013
20	상출	에이치엠엠	25.508	64	공시	크라프트톤	6.996
21	상출	중흥건설	24.935	65	공시	삼양	6.927
22	상출	미래에셋	23.262	66	공시	보성	6.892
23	상출	네이버	22.802	67	공시	동국제강	6.765
24	상출	현대백화점	22.184	68	공시	현대해상화재보험	6.710
25	상출	에쓰-오일	21.640	69	공시	중앙	6.620
26	상출	부영	21.066	70	공시	글로벌세아	6.373
27	상출	쿠광	17.626	71	공시	아이에스지주	6.325
28	상출	금호아시아나	17.391	72	공시	유진	6.286
29	상출	하림	17.336	73	공시	영원	6.089
30	상출	SM	17.079	74	공시	DN	5.876
31	상출	에이치디씨	16.960	75	공시	고려에이치씨	5.857
32	상출	영풍	16.886	76	공시	오케이금융그룹	5.844
33	상출	효성	16.506	77	공시	BGF	5.801
34	상출	호반건설	16.093	78	공시	대신증권	5.759
35	상출	DB	15.714	79	공시	하이트진로	5.530
36	상출	케이티앤지	14.980	80	공시	농심	5.429
37	상출	케이씨씨	14.201	81	공시	신영	5.397
38	상출	장금상선	14.201	82	공시	한솔	5.369
39	상출	교보생명보험	13.207	83	공시	반도홀딩스	5.335
40	상출	코오롱	13.052	84	공시	삼표	5.281
41	상출	오씨아이	12.722	85	공시	하이브	5.250
42	상출	태영	12.315	86	공시	소노인타내셔널	5.176
43	상출	넥슨	11.907	87	공시	원익	5.031
44	상출	세아	11.751	88	공시	파라다이스	5.01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은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5%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도록 하는데, 이 때 ‘국내총생산액’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²⁾에 따라 당해 지정 직전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총생산액의 확정치를 사용함.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5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시 당시 가장 최근의 국내총생산액 확정치인 2021년도 국내총생산액 확정치(2,080조원)³⁾를 사용하였음.

□ 이를 기준으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예상하여 보면, 국내총생산액의 0.3%(6.2조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72개의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고, 국내총생산액의 0.25%(5.2조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85개의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측됨.

2)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장 최근의 국내총생산액 확정치인 2021년 국내총생산액(2,080.2조 원)을 기준으로 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국내총생산액의 0.5%이상)을 실시하였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조(산정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내총생산액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국민계정 중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일 직전에 발표한 국민계정의 명목 국내총생산액의 연간 확정치를 사용한다.

제2조(산정방법)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되는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천억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2021년 국민계정(확정) 및 2022년 국민계정(잠정), 한국은행, 2023.6.2.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예상>

구분	현행	국내총생산의 0.3%	국내총생산의 0.25%
지정기준	5조원	6.2조원	5.2조원
지정결과	88개 기업집단	72개 기업집단	85개 기업집단

-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정액(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유연화하여 규제대상 설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변동없이 유지되어 왔으나,
- 국내총생산은 2017년 1,934조원에서 2023년 2,401조원으로 꾸준히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명목값은 변동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실질값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음.
-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수는 증가추세에 있는 바, 그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과 연동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규제를 부과하도록 하여 경제력 집중을 초래할 수 있는 거대기업집단에 규제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57개	60개	59개	64개	71개	76개	81개	88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정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 연동(0.5% 이상) 방식으로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여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위한 두 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생각됨.

□ 한편, 김상훈의원안과 정연욱의원안은 각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각각 국내총생산의 0.25% 이상, 0.3% 이상으로 설정하여 양자의 차이가 존재함. 구체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선택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규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09